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55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와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에 관한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입주계약 이후 제35조제1항에 따른 변경계약 대상 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개시 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개정, 별지 제7호의2 서식 개정)
- 나. 산업단지 자산유동화가 허용됨에 따라 입주형태가 자가에서 임차로 변경되는 경우를 공장등록변경사항에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 다. 기반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변경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서식을 마련함(안 제31조제4항 신설, 별지 제30호의2 서식 신설).
- 라. 입주업종 정기적 재검토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함(안 제31조제5항 신설).
- 마.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단을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경우 사업단 구성을 규정함(안 제44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바. 공장설립 인·허가의 원활한 온라인 처리를 위해 서식을 일부 변경함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중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에서 “같다.”를 “같으며, 제35조에 따른 변경계약체결 대상 외의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개시 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입주형태변경사항(법 제44조의2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3조제1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30호의2서식으로 한다.

⑤ 법 제33조제1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란 개발계획에 따른 주요유치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을 말한다.

제4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13제1항에 따른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을 “법 제45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

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공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45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단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으로 해당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관리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사업단의 구성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제5호서식, 제5호의2서식, 제7호서식, 제7호의2서식, 제8호의2서식, 제9호서식, 제13호서식, 제25호서식, 제27호서식, 제28호서식, 제29호서식, 제3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사 업 계 획 서

20

회사명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0.00.>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설
[]증설
공장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승인
(신청서)
[]변경승인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	-----	------	-------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창업자 해당 여부: 해당 [] 미해당 [] ※ 신청인은 뒷면의 '창업자 안내'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승인 신청 사항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생산물	
	업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 범위)	
	공사 착공예정일		공사 준공예정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규 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승인 신청사항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신고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 현황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생산품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 내용	구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생산품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서 발급
--------	---	----	---	----	---	----	---	--------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공장설립/제조시설 설치승인 담당 부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0.00.>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 현황	공장 소재지			
	공장설립 승인번호		발행일	
	업종(분류번호)		기준공장 면적률(%)	
	공장가동 개시에정일		공장 준공일(건축물 사용승인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의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4.0.00.>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종업원 수		
사업장 소재지	입주(변경) 계약일		
업종 (분류번호)	인·허가 등록 (등록번호)		
사업 개시(예 정)일	건축 준공일		
규 모	용지 면적(㎡)	건축 연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관리기관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없 음

변경계약체결 대상 외 변경된 사항의 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관리기관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 신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

직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4.0.00>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등록 내용	공장 소재지	지목	보유구분 자가 [], 임대 []
	공장 등록일	사업 시작일	종업원 수 남: 여: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등록 조건	
-------	--

등록변경·증설등 기재사항 변경내용(변경 날짜 및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등록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	등록 여부 확인 처리기관	→	결재 처리기관	→	공장등록 증명서발급 처리기관	→	통보 처리기관
------------------	---	------------	---	---------------------	---	------------	---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된 공장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0. 00.>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공장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 현황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종업원 수					
			생산물					
	공장 업종(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변경 내용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업종 (분류번호)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변경전							
	변경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확인사항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4.0.00.>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입주

[]계약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입주 계약 신청 내용	공장(사업장) 소재지			
	입주형태	[] 분양	[] 임차	[] 양도·양수 [] 기타
	회사명		대표자 성명	
	업 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생산품(서비스)
	규 모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기 존 공 장	회사명		대 표자	
	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규 모	부지 면적(㎡)	제 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계약 변경사항, 사유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4. 0. 00.>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 분 신 청 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처분 내용	공장 소재지		
	용지 면적(㎡)	건축 면적(㎡)	건설공정(%)
	기준공장면적을 달성비율(제조업만 해당)		%
	처분가격(백만원)	대지	건물감정 평가액
	대지 지급 조건		

처 분 사 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등의 설립완료 전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려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1부	수수료 없 음
관리기관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결과 통보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관리기관 공장등록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처 분 신 고 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양도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양수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양도 내용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용지 면적(㎡)	건축 면적(㎡)	양도 가격(백만 원)
	평가액(백만 원)	대지:	건물 감정평가액:
	양도사유		

양수자의 사업계획	업종 (생산업)	분류번호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	가동 예정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려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받을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관리기관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위와 같이 처분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

직인

임대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임대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임차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임대 내용	공장(사업장) 소재지		
	용지 면적(㎡)	건축 면적(㎡)	임대 가격(백만원)
	임대용지 면적(㎡)	임대건축 면적(㎡)	임대 기간
	임대시설		임대사유

임대인의 공장등록 변경	구분	용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변경 전				
	변경 후				

임차인의 사업계획	업종	분류번호	생산물	가동 예정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려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관리기관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위와 같이 처분신고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 직인

기반시설 영향평가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 청 내 용

신청지역	산업단지명	면적	m ²
	위치		

기반시설 원단위	구분	업종	전력(MW)	가스(천 m ³)	용수(천 m ³)	폐수(천 m ³)	폐기물(톤)	기타
	기존							
	변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귀하

첨부서류	기타 기반시설 원단위 변경관련 자료(필요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	검 토 처리기관(담당부서): 한국산업단지공단	➔	결 재	➔	승인 통보
---------------	---	-----	---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사업개시 신고서)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제9조의2(사업개시 신고서) ① --- ----- ----- <u>같으며, 제35조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대상 외의 변경된 내용에 대 해서는 사업개시 신고서에 그 변 경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u>
② ~ ④ (생략) 제11조(공장등록사항의 변경) ① (생략) 1. ~ 6. (생략) <u><신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장등록사항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u>7. 입주형태변경사항(법 제44조 의2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
② ~ ④ (생략) 제31조(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법 제33조제11항에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료”란 별지 제30호의2서식으로 한다.</u>
<u><신설></u>	<u>⑤ 법 제33조제13항에서 “산업</u>

제44조의4(사업단의 구성)

① 법 제45조의13제1항에 따른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신설>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란 개발계획에 따른 주요유치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을 말한다.

제44조의4(사업단의 구성)

① 법 제45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공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5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단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으로 해당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관리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사업단의 구성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u>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연 락 처	(044) 203 - 4432